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 | 1998·10·14 | 조례 제 244호 |
| 개정 | 1999·1·11 | 조례 제 257호 |
| 개정 | 1999·9·20 | 조례 제 304호 |
| 개정 | 2000·7·28 | 조례 제 341호 |
| 개정 | 2001·3·7 | 조례 제 364호 |
| 개정 | 2001·11·28 | 조례 제 392호 |
| 개정 | 2002·4·4 | 조례 제 406호 |
| 개정 | 2003·1·2 | 조례 제 434호 |
| 개정 | 2003·2·17 | 조례 제 444호 |
| 개정 | 2004·1·10 | 조례 제 476호 |
| 개정 | 2004·7·23 | 조례 제 501호 |
| 개정 | 2004·11·24 | 조례 제 508호 |
| 개정 | 2005·3·5 | 조례 제 539호 |
| 개정 | 2005·6·1 | 조례 제 554호 |
| 개정 | 2005·7·7 | 조례 제 571호 |
| 개정 | 2005·9·21 | 조례 제 583호 |
| 개정 | 2006·1·3 | 조례 제 594호 |
| 개정 | 2006·11·16 | 조례 제 640호 |
| 개정 | 2007·7·2 | 조례 제 664호 |
| 개정 | 2008·7·25 | 조례 제 720호 |
| 개정 | 2009·3·31 | 조례 제 754호 |
| 일부개정 | 2011·1·11 | 조례 제 879호 |
| 일부개정 | 2012·3·14 | 조례 제 917호 |
| 일부개정 | 2013·5·6 | 조례 제 978호 |
| 일부개정 | 2013·10·1 | 조례 제1001호 |
| 일부개정 | 2014·12·31 | 조례 제1099호 |
| 일부개정 | 2016·7·5 | 조례 제1234호 |
| 일부개정 | 2017·11·10 | 조례 제1360호 |
| 일부개정 | 2018·3·28 | 조례 제1378호 |
| 전부개정 | 2019·1·1 | 조례 제1464호 (제명개정) |
| 일부개정 | 2019·3·8 | 조례 제1468호 |
| 일부개정 | 2019·8·12 | 조례 제1518호 |
| 일부개정 | 2020·5·8 | 조례 제1592호 |
| 일부개정 | 2020·7·28 | 조례 제1615호 |
| 일부개정 | 2020·11·13 | 조례 제1649호 |
| 일부개정 | 2020·12·29 | 조례 제1661호 |
| 일부개정 | 2021·12·28 | 조례 제1780호 |
| 일부개정 | 2022·3·7 | 조례 제1804호 |
| 일부개정 | 2022·9·30 | 조례 제1857호 |

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
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)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|
| 일부개정 | 2022·9·30 | 조례 | 제1859호 |
| 일부개정 | 2023·3·6 | 조례 | 제1900호 |
| 일부개정 | 2023·11·1 | 조례 | 제2003호 |
| 일부개정 | 2024·5·9 | 조례 | 제2087호 |
| 일부개정 | 2024·7·1 | 조례 | 제2117호 |
| 일부개정 | 2024·9·20 | 조례 | 제2130호 |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·9·30>

제2조(국장 및 담당관·과장·소장의 직급 등) ①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 국장의 직급, 본청·직속기관의 담당관 및 과·소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·소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·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·면·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시 본청

제3조(보좌기관) ① 부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, 홍보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. <개정 2023·11·1>

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
3. 시의회 운영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
4.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
5.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
6.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③ 감사범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시 행정의 감사·조사·징계에 관한 사항
2.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
3. 자치법규 등의 입안심사, 소송사무 조정·통제에 관한 사항
4.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

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시민 및 공무원 대토론회 추진 및 시민소통 네트워크 추진·관리 사항
2.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
3. 시정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

⑤ 삭제 <2023·11·1>

⑥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
2. 전산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23·3·6]

제4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, 경제재정국, 문화교육국, 복지국, 도시주택국, 안전건설국, 환경수자원국,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.

<개정 2023·11·1, 2024·7·1>

[전문개정 2023·3·6]

제5조(자치행정국) 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, 민원여권과, 회계과, 체육진흥과를 둔다. <개정 2024·7·1>

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24·7·1>

1. 서무·의전·보안·복무·인사·조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2. 공공정보·기록관리에 관한 사항
3. 지방행정·행정구역·선거관리에 관한 사항
4.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
5. 민원행정 시책업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·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

6. 민원발급·여권·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
7.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
8.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
9. 회계·결산·계약·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
10.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 사무
11.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
12.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

[전문개정 2023·3·6]

[제목개정 2024·7·1]

제6조(경제재정국) ① 경제재정국에는 기업경제과, 일자리정책과, 세정과, 세원관리과를 둔다.

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2. 공장등록민원에 관한 사항
3. 노사민정 협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일자리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
5.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
6. 지방세·세외수입·세무조사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24·7·1]

제7조(문화교육국) 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예술과, 관광과, 공원녹지과, 시민교육지원과, 도서관과를 둔다.

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국가유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
2.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
3.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
4. 도예산업 육성·지도 및 도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5. 국내 및 국제교류 사무

6. 산림육성 및 공원화에 관한 사항
7.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
8. 주민자치·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9.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
10.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24·7·1]

제8조(복지국) 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, 노인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청년아동과를 둔다.

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·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
2. 노인 및 장애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·조정 및 시행
3. 장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·조정 및 시행
4. 여성 및 가정(가족)복지 및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·조정 및 시행
5.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·조정 및 시행
6.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
7. 청소년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24·7·1]

제9조(도시주택국)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과, 허가과, 토지정보과, 주택과, 건축과를 둔다.

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23·11·1>
3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
4. 개발민원 및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
5. 지적·도로명주소·공시지가·토지관리에 관한 사항
6. 주택·주거복지·건축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
7. 삭제 <2023·11·1>

8. 삭제 <2023·11·1>

[전문개정 2023·3·6]

[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0조(안전건설국)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, 건설과, 도로관리과, 교통정책과, 차량등록과를 둔다. <개정 2024·7·1>

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24·7·1>

1. 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·평가에 관한 사항
4.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
5.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6.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
7.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
8.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9.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
10. 대중교통기획,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
11. 차량등록,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, 주·정차 지도·단속 관련 사무

[전문개정 2023·3·6]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1조(환경수자원국) ① 환경수자원국에는 환경보호과, 자원순환과, 수도과, 하수과를 둔다.

② 환경수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환경정책개발·보전 및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
2. 환경기초시설(하수처리 제외)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도
4.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
5.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

6. 상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납
7. 지방채 발행
8. 상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 및 시공감독
9.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공무원 지도감독
10. 환경기초시설의 설치
11.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·감독
12.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·시행

[본조신설 2024·7·1]

제12조(첨단미래도시추진단) 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는 첨단전략산업과, 미래도시과를 둔다.

②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시책·현안사항 중 시장지시 중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2. 전략사업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
3.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련된 사항
4.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
5.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
6.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
7.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8. 역세권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
9.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
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, 재건축
11.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23·11·1]

[중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3장 직속기관

제1절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

제13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 <개정 2022·9·30>

② 「지역보건법」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.

③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농어촌의료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·보건지소·건강생활지원센터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9·8·12, 시행일 2020·1·1]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4조(소장 등) ① 보건소,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,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,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. <개정 2019·8·12 [시행일 2020·1·1]>

②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, 건강증진과, 질병관리과를 둔다. <개정 2020·11·13, 2023·11·1>

③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,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「농어촌의료법」 제20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일상생활권역은 이천시 관내로 한다.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5조(소관사무) ① 보건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건강도시 추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2.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
5. 의료기사·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

6.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
 7. 「농어촌의료법」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,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
 8.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
 9.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
 10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11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1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13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에 관한 사항
 14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에 관한 사항
 15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 16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 17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
-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 「농어촌의료법 시행령」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

[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2절 농업기술센터

제16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두며 센터에 농업정책과, 축산과, 농업진흥과, 기술보급과, 연구개발과를 둔다.

② 센터의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38-52에 둔다.

[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7조(소장) 센터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8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0·12·29>

1.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
2. 농업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3. 농촌지도사업계획 및 평가, 농업기술 홍보·농촌활력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
4.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5. 관광농업, 교육훈련, 경영개선,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
6. 식량·원예·특용·특화작물의 생산,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
7.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, 농업기계수리,·대요에 관한 사항
8. 축산정책, 동물방역,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4장 하부행정기관 <개정 2024·7·1>

제19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7조제1항·제4항에 따라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. <개정 2022·9·30>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·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.

제20조(직무) 읍·면·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(동의 경우는 제외한다)·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발급, 통·리·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

제21조(읍·면·동장) 읍에는 읍장, 면에는 면장, 동에는 동장을 두며, 읍·면·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2조(현장민원실 설치) 읍·면·동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 민

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, 인감, 체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, 민원서류 발급, FAX민원 등 각종 증명을 처리 할 수 있다.

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<개정 2024·7·1>

제23조(정원의 총수)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1,212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·8·12, 2020·5·8, 2020·7·28, 2020·11·13, 2020·12·29, 2021·12·28, 2022·3·7, 2023·3·6, 2024·7·1>

1. 행정기관의 정원 : 1,186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6명

제24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4·7·1>

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4·7·1>

제25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 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·7·1>

제26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7조(한시정원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6과 같다.

[본조신설 2024·7·1]

부칙 <2019·1·1 조례 제1464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 중

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제4항제1호 중 “예산공보담당관, 복지정책과장, 농정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, 복지정책과장, 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조례」 별표 1의 이천시 주관부서 중 “기획감사담당관실”을 “교육청소년과”로, “문화관광과”를 “문화예술과”로, “농정과”를 “농업정책과”로 하고, 별표 3의 비상1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중 “예산공보담당관실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실”로 하고 “농정과”를 “농업정책과”로, “문화관광과”를 “문화예술과”로 하고, 별표 4의 실무반 편성 중 “예산공보담당관실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실”로, “농정과”를 “농업정책과”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담당관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안전건설국장 및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⑧ 「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9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⑨ 「이천시 도시개발 조례」 제12조제3항 중 “도시주택국장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호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」 제26조제3항 중 “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기획감

사담당관”을 “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26조제3항 중 “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기획감사담당관, 기업지원과장, 사회복지과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기업지원과장, 노인장애인과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이천시 주택 조례」 제9조제2항 중 “도시주택국장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종합민원국장, 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⑬ 「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기획감사담당관, 예산공보담당관, 민원소통담당관”을 “미래전략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, 홍보관광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산업환경국, 안전건설국, 도시주택국”을 “종합민원국, 기업환경국, 안전도시건설국”으로 한다.

⑭ 「이천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」 별표 위임사무명 중 “(사회복지과)”를 “(노인장애인과)”로 하고, “(농정과)”를 “(농업정책과)”로 한다.

⑮ 「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」 제7조제2항 중 “산업환경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업진흥과장, 농정과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업진흥과장, 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⑯ 「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⑰ 「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제3호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⑱ 「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장애인과장”으로 한다.

⑲ 「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⑳ 「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㉑ 「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」 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- ② 「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- ③ 「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제3항제1호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- ④ 「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별지 제2호서식 중 “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⑤ 「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⑥ 「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, 제5조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⑦ 「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별지 2. 비용추계 중 “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⑧ 「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- ⑨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」 제4조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”으로 한다.
- ⑩ 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 제8조제3항 중 “평생교육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- ⑪ 「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장애인과장”으로 한다.
- ⑫ 「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장애인과장”으로 한다.
- ⑬ 「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5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- ⑭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」 제6조의3제2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- ㉟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농정과장, 산림공원과장, 문화관광과장, 농업진흥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, 산림공원과장, 문화예술과장, 농업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- ㊱ 「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기업지원과장”을 “미래전략담당관”으로 한다.
- ㊲ 「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4항 중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- ㊳ 「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3항제1호 중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- ㊴ 「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중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- ㊵ 「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 중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- ㊶ 「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9·3·8 조례 제146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1항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제11조제2항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9·8·12 조례 제151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,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5·8 조례 제15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7·28 조례 제161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11·13 조례 제164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12·29 조례 제166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조례」 별표 1의 이천시 주관부서 중 “문화예술과”를 “문예관광과”로 하고, “세무과”를 “세정과”로 하며, 별표 2, 별표 3 및 별표 4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각각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별표 3 및 별표 4 중 “기획예산담당관실” 및 “문화예술과”를 각각 “기획예산담당관” 및 “문예관광과”로 하며, “사회복지과(α)”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「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미래전략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, 홍보관광담당관”을 “소통홍보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체육지원센터, 이천아트홀”을 “체육지원센터”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」 제6조의3제2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1·12·28 조례 제178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.

부칙 <2022·3·7 조례 제18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조례 제1857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
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조례 제185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소통홍보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, 자치행정국, 복지문화국, 보건소, 체육지원센터,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”를 “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, 홍보담당관, 미래성장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행정자치국, 복지환경국, 보건소”로 하고, 같은 항제3호 중 “종합민원국, 기업환경국, 안전도시건설국”을 “경제문화국, 도시주택국, 안전건설국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6조제5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자치행정

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행정자치국장, 경제문화국장, 안전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

⑨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”으로 하고, “자치행정과장, 체육지원센터소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, 체육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이천시 주택 조례」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종합민원국장”을 “도시주택국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 전단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경제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항제1호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⑬ 「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⑭ 「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허가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⑮ 「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호 중 “기업환경국장, 산림공원과장”을 “경제문화국장, 공원녹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⑯ 「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」 제26조제3항 중 “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기업지원과장”을 “경제문화국장, 안전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역경제팀장(or 소비자업무 담당팀장)”을 “소비자업무 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⑰ 「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“기업환경국장”을 “경제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⑱ 「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」 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기업환경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- ⑲ 「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제3항제1호 중 “기업환경국장, 자원관리과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, 자원순환과장”으로 한다.
- ⑳ 「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- ㉑ 「이천시 도시개발 조례」 제12조제3항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도시주택국장”으로 한다.
- ㉒ 「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1항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- ㉓ 「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제11조제2항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- ㉔ 「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- ㉕ 「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하고,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- ㉖ 「이천시 공인 조례」 제7조제3항, 제8조 및 제9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각각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제12조의2제1항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,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, “정보통신과장”을 “정보통신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- ㉗ 「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5조 중 “교통행정과장”을 “교통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제4항 중 “교통행정과장”을 “교통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2. 행정지원과장
 3. 도로관리과장
 4. 도시과장
- ㉘ 「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| 재난관리 주관기관 | 재난 및 사고의 유형 | 이천시 주관부서 |
|---|---|--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· 전파 재난, 정보통신 관련 사고 ·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 | 정보통신담당관 |
| 교육부 | ·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| 자치교육과 |
|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| ·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· 문화재 시설 사고 | 문화예술과 |
| 농림축산식품부 | · 가축 질병 · 저수지 사고 | 축산과 농업정책과 |
| 산업통상자원부 | ·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· 원유수급 사고 · 전력사고 | 1. 기업경제과 |
| 보건복지부 | · 감염병 재난 · 보건의료 사고 | 보 건 소 |
| 환경부 | ·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·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·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 · 황사 · 식용수(지방·광역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 | 환경보호과 " " " 상하수도사업소 |
| 고용노동부 | ·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| 소관부서 |
| 국토교통부 | · 도로 및 터널 사고 · 육상화물운송 및 지하철 사고 |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|
| 금융위원회 | ·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| 세 정 과 |
| 문화체육관광부 | · 경기장(체육시설 포함)에서 발생한 사고 | 체육진흥과 |
| 산림청 | · 산불, 산사태 | 공원녹지과 |
| 행정안전부 소방청 | · 화재 · 위험물 사고 ·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· 풍수해(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대설, 지진 등) · 낙뢰 · 가뭄 | 소관부서 기업경제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" 농업정책과· 상하수도사업소 |
| 비고 :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이천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. | | |

별표 2의 상시대비단계 제2호 및 사전대비단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실무반 편성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 장 |
| 차 장 | 부시장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
| 통 제 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

| | |
|-------|---|
| 실 무 반 |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 수행. |
|-------|---|

2. 실무반 편성 : 2+α명

| | |
|----------------|--|
| 본 부 장 | 시 장 |
| 차 장 | 부시장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
| 통 제 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
| 실 무 반 (2+α) |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근무자(2), 재난 유형별 지원부서의 직원(α)이 실무반 기능 수행 ※ 상황관리 총괄 및 재난취약지역 사전 대비 점검 등 |

별표 3의 비상1단계 제2호, 비상2단계 제2호 및 비상3단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실무반 편성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본 부 장 | 시 장 | |
| 차 장 | 부시장 |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
| 통 제 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 |
| 근무인원 | 총 4+α명 | |
| 상황관리 총괄반 (4+α명) | 반 장(1) | (여름철)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(겨울철) 재난안전 부서,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|
| | 재난상황관리 (3+α) | <여름철> 재난안전 부서(3) |
| | | <겨울철> 재난안전 부서(3) 도로관리 부서(2) |
| | | ※ 상황관리총괄,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취약지역 점검, 상황보고서작성 등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명) 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상하수도사업소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 |

2. 실무반 편성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 장 | | |
| 차 장 | 부시장 | |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 |
| 통 제 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 | |
| 근무인원 | 총 6+ α 명 | | |
| 상황관리 총괄반 (6+ α 명) | 반 장(2) | (여름철)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(2) (겨울철) 재난안전 부서,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(2) | |
| | 재난상황관리 (4+ α) | <여름철> 재난안전 부서(4) | <겨울철> 재난안전 부서(4) 도로관리 부서(3) |
| | | ※ 상황관리총괄,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취약지역 점검, 인명·재산피해 관리, 상황보고서 작성 등 |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 명) 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 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상하수도사업소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행정지원과 및 자치 교육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 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 |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| -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 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- 지역자율방재단 | | |

2. 실무반 편성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 장 | | |
| 차 장 | 부시장 | |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 |
| 통 제 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 | |
| 근무인원 | 총 8+ α + β 명 | | |
| 상황관리 총괄반 (8+ α 명) | 반 장(3) | (여름철)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(3) (겨울철) 재난안전 부서,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(3) | |
| | 재난상황관리 (5+ α) | <여름철> 재난안전 부서(5) | <겨울철> 재난안전 부서(5) 도로관리 부서(4) |
| | | ※ 상황관리총괄,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 취약지역 점검, 인명·재산피해 관리, 상황보고서작성 등 |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 명) 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 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상하수도사업소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행정지원과 및 자치 교육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 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(β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· 지역자율방재단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
별표 4 제2호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재난안전 소관 국장”으로 하고,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|
|---|
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상하수도사업소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
|---|

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 분 | 주관기관·부서 | 지원기관·부서 | 담 당 업 무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| 총괄조정관 | | 본부장·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|
| | 통제관 | | 본부장·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,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|
| | 담당관 | | 본부장·차장·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, 실무업무 총괄 |
| 상황관리 총괄 | 안전총괄과 (겨울철 :건설과)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·분석 등 정보 제공 ·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·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·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·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·처리 · (여름철)저수지, 하천 등 수위 및 상황파악 · (겨울철)도로제설 추진상황 파악 ·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·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·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·사전대피 등 추진 실태 관리 ·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※ 13개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 상황 취합 ·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·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관리 등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| 복지정책과 | 이천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해구호물자 확보·비축상황 관리 · 이재민수용시설 파악·지정 ·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관리 ·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·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대책 지원 ·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· 사망·실종자 유족 대책, 응급생계구호 실시 |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| 구 분 | 주관기관·부서 | 지원기관·부서 | 담 당 업 무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재난현장 환경정비 |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| - | · 환경오염물질(재난폐기물, 위험물 등)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·관리 ·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 ·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·운영 · 환경정비분야 읍·면·동 복구현황 파악 |
| 긴급 통신지원 | 정보통신 담당관 | KT이천지점 | ·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·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·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· 통신분야 읍·면·동 복구현황 파악 |
| 시설 응급복구 | 소관시설 담당부서 |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어촌공사 | · 공공·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· 공공·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· 공공·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·읍·면·동 시설응급복구현황 파악 |
| 에너지 기능복구 | 기업경제과 | 한국전력공사코원에너지서비스 | · 가스, 전기, 유류 등 국민생활밀착형 피해·복구 상황 파악 ·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·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 |
| 재난수습 홍보 | 홍보담당관 | - | ·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· 재난 예·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(전광판 등) ·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· 각종 보도자료 작성·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· 언론사 요구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|
|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| 안전총괄과 |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| ·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·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, 자재·장비확보 지도·확인 · 유관기관,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· 펌프장 가동, 가저류지 확보 및 운영관리 |
| 교통대책 | 교통정책과 | 이천경찰서 | ·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및 교통수단 지원 ·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· 하천변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·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·지원 |
| 의료·방역 | 보건소 | 이천소방서 | · 재난지역 의료·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·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·운영 · 의료·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·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·운영 지도·확인 ·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·위생관리 지도·확인 |
| 자원봉사 관리 | 자치교육과 | 자원봉사센터 | ·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·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·확인 ·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· 재난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|
| 사회질서 유지 | 이천경찰서 | 교통정책과 | ·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·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·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·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|
| 수색, 구조·구급 | 이천소방서 | 보건소 | · 재난지역 수색, 구조·구급 지원 · 구조·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(헬기, 응급장비 등) ·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·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|

| 구 분 | 주관기관·부서 | 지원기관·부서 | 담 당 업 무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기타부서 및 기관, 단체 | | |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, 단체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추진 및 지원 |

별표 6의 비고(주관부서)란 중 “정보통신과”를 “정보통신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기업지원과”를 “기업경제과”로 하며, “교통행정과”를 “교통정책과”로 하고, “자원관리과”를 “자원순환과”로 하며, “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”를 “행정지원과 자치교육과”로 한다.

㉔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 제10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㉕ 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 제8조제3항 중 “교육청소년과장”을 “자치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5조제2항 중 “교육청소년과장”을 “청년아동과장”으로 한다.

㉗ 「이천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」 별표 중 “민원봉사과”를 “민원여권과”로, “징수과”를 “세원관리과”로, “기업지원과”를 “기업경제과”로, “자원관리과”를 “자원순환과”로, “건설과”를 “도로관리과”로, “주택과”를 “건축과”로, “종합허가과”를 “허가과”로, “체육진흥센터”를 “체육진흥과”로 한다.

㉘ 「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 중 “기업지원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㉙ 「이천시 행정서비스현장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5항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민원여권과장”으로 하고,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각각 “민원여권과장”으로 하며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민원여권과장”으로 한다.

㉚ 「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 중 “도시계획과”를 “도시과”로 한다.

㉛ 「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제4항제1호 중 “산림공원과장, 건설과장”을 “공원녹지과장, 도로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㉜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정책과장, 산림공원과장, 문예관광과장”을 “관광과장, 공원녹지과

장, 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㉔ 「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」 제5조제2항 중 “산림공원과”를 “공원녹지과”로 한다.

㉕ 「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체육지원센터소장”을 “체육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2항제3호 중 “재난안전총괄과장”을 “재난안전 총괄 부서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3·11·1 조례 제200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, 홍보담당관, 미래성장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행정자치국, 복지환경국,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, 홍보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행정자치국, 복지환경국,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제문화국, 도시주택국, 안전건설국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”를 경제문화국, 도시주택국, 안전건설국, 첨단미래도시추진단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4·5·9 조례 제20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7·1 조례 제211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자치국, 복지환경국(복지정책과, 노인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청년아동과), 보건소, 문화예술과, 관광과, 도서관과”를 “자치행정국, 경제재정국(세정과, 세원관리과), 문화교육국(문화예술과, 관광과, 시민교육지원과, 도서관과), 복지국, 보건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제문화국(기업경제과, 일자리정책과, 공원녹지과), 도시주택국, 안전건설국, 첨단미래도시추진단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, 환경보호과, 자원순환과”를 경제재정국(기업경제과, 일자리정책과), 문화교육국(공원녹지과), 도시

주택국, 안전건설국, 환경수자원국, 첨단미래도시추진단, 농업기술센터”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재정국장, 복지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장(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)”을 “소장(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)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재정국장, 복지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4항 중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경제재정국장, 복지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6조제5항제1호 중 “행정자치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행정자치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자치행정국장, 경제재정국장, 안전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

⑨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 전단 중 “경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항제1호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- ⑬ 「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국장, 경제재정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- ⑭ 「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호 중 “경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- ⑮ 「이천시 소비자기본 조례」 제26조제3항 중 “경제문화국장”을 “경제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- ⑯ 「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“경제문화국장”을 “경제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- ⑰ 「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」 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환경수자원국장”으로 한다.
- ⑱ 「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환경수자원국장”으로 한다.
- ⑲ 「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 하고,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- ⑳ 「이천시 공인 조례」 제7조제3항, 제8조 및 제9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하고, 제12조의2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,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,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- ㉑ 「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9조제3항제2호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- ㉒ 「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재난관리 주관기관 | 재난 및 사고의 유형 | 이천시 주관부서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· 전파 재난, 정보통신 관련 사고 ·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 | 정보통신담당관 |
| 교육부 | ·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| 시민교육지원과 |

| | | |
|---|---|--|
|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| ·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· 문화재 시설 사고 | 문화예술과 |
| 농림축산식품부 | · 가축 질병 · 저수지 사고 | 축산과 농업정책과 |
| 산업통상자원부 | ·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· 원유수급 사고 · 전력사고 | 기업경제과 |
| 보건복지부 | · 감염병 재난 · 보건의료 사고 | 보 건 소 |
| 환경부 | ·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·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·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 · 황사 · 식용수(지방·광역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 | 환경보호과 " " " 수도과 |
| 고용노동부 | ·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| 소관부서 |
| 국토교통부 | · 도로 및 터널 사고 · 육상화물운송 및 지하철 사고 |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|
| 금융위원회 | ·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| 세 정 과 |
| 문화체육관광부 | · 경기장(체육시설 포함)에서 발생한 사고 | 체육진흥과 |
| 산림청 | · 산불, 산사태 | 공원녹지과 |
| 행정안전부 소방청 | · 화재 · 위험물 사고 ·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· 풍수해(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대설, 지진 등) · 낙뢰 · 가뭄 | 소관부서 기업경제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" 농업정책과· 수도과·하수과 |
| 비고 :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이천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. | | |

별표 3의 비상1단계 제2호, 비상2단계 제2호 및 비상3단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실무반 편성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 장 | |
| 차 장 | 부시장 |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
| 통 제 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 |
| 근무인원 | 총 4+α 명 | |
| 상황관리 | 반 장(1) | (여름철)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|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괄반 (4+ α 명) | 재난상황관리 (3+ α) | (겨울철) 재난안전 부서,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| |
| | | <여름철> 재난안전 부서(3) | <겨울철> 재난안전 부서(3) 도로관리 부서(2) |
| | | ※ 상황관리총괄,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취약지역 점검, 상황보고서작성 등 |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 명) | 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수도과(α), 하수과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자치행정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 |

2. 실무반 편성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본부장 | 시장 | |
| 차장 | 부시장 |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
| 통제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
| 담당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 |
| 근무인원 | 총 6+ α 명 | |
| 상황관리 총괄반 (6+ α 명) | 반장(2) | (여름철)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(2) (겨울철) 재난안전 부서,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(2) |
| | 재난상황관리 (4+ α) | <여름철> 재난안전 부서(4) <겨울철> 재난안전 부서(4) 도로관리 부서(3) ※ 상황관리총괄,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취약지역 점검, 인명·재산피해 관리, 상황보고서 작성 등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 명) 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수도과(α), 하수과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자치행정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| -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 - 지역자율방재단 | |

2. 실무반 편성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부 장 | 시 장 | | |
| 차 장 | 부시장 | | |
| 총괄조정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 |
| 통 제 관 | 재난안전 소관 국장 | |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재난안전 부서장) | | |
| 근무인원 | 총 8+ α + β 명 | | |
| 상황관리 총괄반 (8+ α 명) | 반 장(3) | (여름철)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(3) (겨울철) 재난안전 부서,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(3) | |
| | 재난상황관리 (5+ α) | <여름철> 재난안전 부서(5) | <겨울철> 재난안전 부서(5) 도로관리 부서(4) |
| | | ※ 상황관리총괄,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 취약지역 점검, 인명·재산피해 관리, 상황보고서작성 등 |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 명) 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수도과(α), 하수과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자치행정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 |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(β 명) | ·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 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· 지역자율방재단 | | |

별표 4 제2호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(α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|
|--|
| 복지정책과(α), 자원순환과(α), 환경보호과(α), 기획예산담당관(α), 도로관리과(α), 농업정책과(α), 축산과(α), 공원녹지과(α), 주택과(α), 문화예술과(α), 체육진흥과(α), 수도과(α), 하수과(α), 기업경제과(α), 교통정책과(α), 보건소(α), 자치행정과(α), 이천소방서(α), 이천경찰서(α), 홍보담당관(α), 노인장애인과(α), 건설과(α), 정보통신담당관(α) |
|--|

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| 주관기관·부서 | 지원기관·부서 | 담 당 업 무 |
| | 총괄조정관 | | 본부장·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|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| 구 분 | 주관기관·부서 | 지원기관·부서 | 담 당 업 무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통제관 | | | 본부장·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, 준비단계에서 상황 업무 총괄 |
| 담당관 | | | 본부장·차장·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, 실무업무 총괄 |
| 상황관리 총괄 | 안전총괄과 (겨울철 :건설과)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·분석 등 정보 제공 ·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·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·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·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·처리 · (여름철)저수지, 하천 등 수위 및 상황파악 · (겨울철)도로제설 주진상황 파악 ·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·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·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·사전대피 등 추진 실태 관리 ·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· ※ 13개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 상황 취합 ·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·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관리 등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| 복지정책과 | 이천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해구호물자 확보·비축상황 관리 · 이재민수용시설 파악·지정 ·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관리 ·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·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대책 지원 ·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· 사망·실종자 유족 대책, 응급생계구호 실시 |
| 재난현장 환경정비 |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오염물질(재난폐기물, 위험물 등)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·관리 ·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 ·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·운영 · 환경정비분야 읍·면·동 복구현황 파악 |
| 긴급 통신지원 | 정보통신 담당관 | KT이천지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·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·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· 통신분야 읍·면·동 복구현황 파악 |
| 시설 응급복구 | 소관시설 담당부서 |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어촌공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·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· 공공·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· 공공·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 · 읍·면·동 시설응급복구현황 파악 |
| 에너지 기능복구 | 기업경제과 | 한국전력공사코 원에너지서비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스, 전기, 유류 등 국민생활밀착형 피해·복구 상황 파악 ·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·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 |
| 재난수습 홍보 | 홍보담당관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· 재난 예·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(전광판 등) ·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· 각종 보도자료 작성·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· 언론사 요구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|

| 구 분 | 주관기관·부서 | 지원기관·부서 | 담 당 업 무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| 안전총괄과 |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| ·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·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, 자재·장비확보 지도·확인 · 유관기관,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· 펌프장 가동, 가저류지 확보 및 운영관리 |
| 교통대책 | 교통정책과 | 이천경찰서 | ·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및 교통수단 지원 ·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· 하천변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·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·지원 |
| 의료·방역 | 보건소 | 이천소방서 | · 재난지역 의료·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·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·운영 · 의료·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·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·운영 지도·확인 ·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·위생관리 지도·확인 |
| 자원봉사 관리 | 자치행정과 | 자원봉사센터 | ·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·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·확인 ·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· 재난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|
| 사회질서 유지 | 이천경찰서 | 교통정책과 | ·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·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·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·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|
| 수색, 구조·구급 | 이천소방서 | 보건소 | · 재난지역 수색, 구조·구급 지원 · 구조·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(헬기, 응급장비 등) ·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·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|
| 기타부서 및 기관, 단체 | | |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, 단체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추진 및 지원 |

별표 6의 비교(주관부서)란 중 “행정지원과 자치교육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 한다.

㉓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 제10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㉔ 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 제8조제3항 중 “자치교육과장”을 “시민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제22조 및 제24조제1항 중 “평생교육과”를 “시민교육지원과”로 한다.

㉕ 「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2조 중 “차량등록사업소장”을 “차량등록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」 제4조 중 “상하수도사업소장”을 “환경수자원국장”으로 한다.

㉗ 「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3조제3항 중 “상하수도사업소장”을 “환경수자원국장”으로 한다.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㉘ 「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상하수도사업소장”을 “환경수
자원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4·9·20 조례 제213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4. 5. 9>

보건소 · 보건지소 ·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
(제10조제4항 관련)

| 명 칭 | 위 치 | 관 할 구 역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이천시 보건소 | 이천시 부악로 36(중리동) | 이천시 일원 |
| 이천시보건소남부통합지소 |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180번길 25 | 장호원읍·설성면·율면 일원 |
| 이천시보건소 부발읍지소 |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17 | 이천시 부발읍 일원 |
| 이천시보건소 백사면지소 |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1030 | 이천시 백사면 일원 |
| 이천시보건소 호법면지소 |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 | 이천시 호법면 일원 |
| 이천시보건소 대월면지소 |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-10 | 이천시 대월면 일원 |
| 이천시보건소 모가면지소 |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63번길 54 | 이천시 모가면 일원 |
| 이천시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|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05-23 | 이천시 마장면 일원 |

[별표 2] <개정 2024. 7. 1>

보건진료소의 명칭, 소재지 및 관할구역

(제13조제4항 관련)

| 명 칭 | 위 치 | 관 할 구 역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장북보건진료소 | 장호원읍 나래천로509번길 129-4 | 이황3, 나래1·2·3리 |
| 가산보건진료소 |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96 | 가산1·2·3리, 응암리, 송온리, 수정리 |
| 고백보건진료소 | 부발읍 중부대로1997번길 112 | 고백1·2리, 대관리, 신원2리 |
| 도암보건진료소 | 신둔면 원적로 425 | 도암1·2·3리, 도봉1·2리, 장동1·2·3리, 지식리, 수하리 |
| 마교보건진료소 | 신둔면 황무로347번길 7 | 마교리, 인후1·2리, 용면리, 소정리 |
| 우곡보건진료소 | 백사면 청백리로 380 | 우곡리, 내촌리, 도지1·2리, 조읍1리, 상용리, 백우리 |
| 매곡보건진료소 | 호법면 이섭대천로100번길 40 | 매곡1·2리, 단천1리, 동산1·2리 |
| 유산보건진료소 | 호법면 이섭대천로793번길 23 | 유산1·2·3·4리 |
| 표교보건진료소 | 마장면 중부대로638번길 15 | 표교1·2·3리, 목리, 이치1·2리, 장암1·2리 |
| 단월보건진료소 | 이천시 단월로38번길 3 | 호법면 안평2리, 단월동1·2통, 대포동1·2·3통, 장록동1통, 고담동1·2통 |
| 군량보건진료소 | 대월면 대월로436번길 122 | 군량1·2·3리, 구시리, 송라리 |
| 어농보건진료소 | 모가면 사실로 716 | 어농1·2·3리, 두미1·2리 |
| 장천보건진료소 | 설성면 설성로 173-5 | 장천1·2·3·4리, 암산1·2리 |
| 상봉보건진료소 | 설성면 설가로301번길 43-17 | 상봉1·2·3·4리, 송계1·2·3리 |
| 월포보건진료소 | 율면 임오산로362번길 70 | 월포2·3·4리, 총곡리 |

[별표 3] <개정 2024·7·1>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24조제1항 관련)

| |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구 분 | 일 반 직 | 별정직·정무직 |
| 비 율 | (99)% 이상 | (1)% 이내 |

비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4] <개정 2024·9·20>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규정

(제24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 공무원

| |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구 분 | 4급 이상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전문경력관 |
| 비 율 | (1)% 이내 | (6)% 이내 | (26.5)% 이내 | (33)% 이내 | (25)% 이내 | (8)% 이상 | (0.5)% 이내 |

※ 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

| | | | | |
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구 분 | 연구직 | | 지도직 | |
| | 연구관 | 연구사 | 지도관 | 지도사 |
| 비 율 | - | (100)% 이내 | (13)% 이내 | (87)% 이상 |

※ 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 공무원

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구 분 | 5급상당 | 6급상당 | 7급상당 이하 |
| 비 율 | - | (40)% 이내 | (60)% 이상 |

※ 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5] <개정 2024. 7. 1>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

(제25조 관련)

| 기관별 | | 총계 | 의회사무 기구 | 본청 | 직속 기관 | 읍 | 면 | 동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|---|---|
| 총 계 | | 1,212 | 1,212 | | | | | |
| 정무직 | 소계 | 1 | 1 | | | | | |
| | 시장 | 1 | | 1 | | | | |
| 일반직 | 소계 | 1,163 | 1,163 | | | | | |
| | 3급 | 1 | | 1 | | | | |
| | 4급 | 10 | | 8 | 2 | | | |
| | 5급 | 60 | 3 | 38 | 5 | 2 | 8 | 4 |
| | 6급 이하 | 1,092 | 1,092 | | | | | |
| 별정직 | 소계 | 3 | 3 | | | | | |
| | 6급 상당 이하 | 3 | | 3 | | | | |
| 연구직 | 소계 | 5 | 5 | | | | | |
| | 연구사 | 5 | | 2 | 3 | | | |
| 지도직 | 소계 | 40 | 40 | | | | | |
| | 지도관 | 3 | | | 3 | | | |
| | 지도사 | 37 | | | 37 | | | |

[별표 6] <개정 2024. 9. 20>

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

(제27조 관련)

| 기관별 | 부 서 | 구 분 | | 정 원 | 운용시한 |
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직급 | 직군 | | |
| 본청 | 첨단미래도시추진단 | 4급 | 행정+기술 | 1명 | 2026년 10월 31일까지 |